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6월 1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14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6. 14.(월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4-203-5270)	담 당 자	김형민 주무관(044-203-5278)

노후 송유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

- 송유관 누유 방지를 위하여 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을 개정·공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**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**토록 하는 내용의 **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** 개정법률안이 6.15일 공포되고, 12.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○ 금번 법개정은 '18년 케이티(KT) 통신구,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"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"('19.5월)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.

□ 길이가 1,344km에 달하는 **전국 송유관의 99%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**되어 일부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,

○ 앞으로 송유관 운영·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서 **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**을 활용하여 **매설된 배관의 두께,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**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○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

□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**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, 화재 등 사고**를 **선제적으로 예방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밖에, 「**고압가스 안전관리법**」, 「**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**」도 개정·공포되었는데,

○ 안전기준을 제·개정하는 **'가스기술기준위원회*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**하여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**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**하였으며,

○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**액화석유가스(LPG) 특정사용시설***에 대한 **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****토록 하여 **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**시켰다.

* 엘피지(LPG)를 사용하는 유치원, 학교, 영화관, 종교시설, 전통시장 등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시설

** '21.12월부터 「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」(행정안전부)에 연계하여 공개 예정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김형민 주무관(☎ 044-203-527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